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6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복기왕·정성호·문진석

정준호 · 맹성규 · 채현일

박용갑 • 이연희 • 염태영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 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제10호의2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에 제1항제10호의2의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
	산액 및 산출근거(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지정권자는 제1항제10호의2
	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
	시정비지원기구에 제1항제10호
	의2의 사항에 대한 검증을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